

보도시점

2026. 8. 17.(월) 11:00

2026. 8. 18.(화) 조간

배포

2026. 8. 17.(월) 06:00

산란계 최소 사육면적 확대($0.05\text{m}^2 \rightarrow 0.075\text{m}^2$) 이행을 위한 현장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text{m}^2 \rightarrow 0.075\text{m}^2$) 조치의 정상 추진을 위해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산란계사의 신축 및 증·개축을 제한하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조치에 따라 2027년 9월 이후로 마리당 0.05m^2 의 면적으로 산란계를 사육하던 ‘4번란’ 생산 농가는 마리당 0.075m^2 의 면적으로 사육이 가능하도록 사육시설을 확충하거나 사육마릿수를 감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란공급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란계사의 신축 및 증·개축 비용을 지원하여 선제적으로 사육용량을 확보하고 사육시설 확충을 제한하는 규제를 합리화하여 국민 먹거리 물가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① 산란계 사육용량 확충 지원

농식품부는 산란계사 신축 및 증·개축 비용 지원을 위한 예비사업자 선정을 추진한다. 8월 31일까지 시·군·구를 통해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①건축을 위한 인·허가 취득 여부, ②예산투입 대비 사육마릿수 증가 효과, ③연내 사업완료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예비사업자는 2027년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추진 자격을 부여받는다.

기존 산란계 농가가 사육시설을 확장하여 사육마릿수를 유지하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현재는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지 않으나 건축을 위한 인·허가를 취득한 경우에도 지원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모든 사업자는 2027년 이내에 공사와 대출실행을 완료해야 하며 방사식·평사식 사육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자격이 제한된다.

② 산란계 신축 및 증·개축 규제 합리화

「가축분뇨법」에 따라 시·군은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는 신규 축사의 진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기존 축사의 증·개축 또한 제한된다. 시·군은 축사가 민원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때문에 지금의 규제환경 하에서는 축산물의 공급확대가 크게 제한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육류소비량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업계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거리에 상한을 설정하거나 방역·악취저감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증·개축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

2025년 12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가축사육 입지 연구’에 따르면 시·도 면적의 87.2%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산란계 축종의 경우 기존 농가의 94.4%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포함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산란계 축사의 신축은 물론 기존 농가의 사육마릿수 유지를 위한 증·개축도 큰 제약을 받고 있다.

농식품부와 기후부는 산란계 최소 사육면적 확대 조치를 감안하여 산란계 농가에 한해 가축분뇨 배출량 등 환경오염 부하의 증가가 없다면 사육마릿수 유지를 위한 증·개축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지방정부 설득을 위해 7월 27일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 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 농식품부와 기후부는 시·군의 조례가 산란계 농가의 사육마릿수 유지를 위한 증·개축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만큼 시·군의 조례개정을 촉구했다. 향후에는 산란계 지원사업 수요 농가는 많으나 인·허가 문제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시·군들을 대상으로 5차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가축사육제한구역 조정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 (일시) 7. 27.(월) 15:00~17:00, (참석 기관) 농식품부(축산정책과장), 기후부(수질수생태과장), 시·군 환경·축산 담당과장 등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식품안전, 동물복지,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 축산업의 환경부하 저감 등 다양한 정책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27년 산란계케이지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선정 추진방안

농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기획)	책임자	과 장	신우식	(044-201-2311)
		담당자	사무관	이현	(044-201-2315)
	축산정책과(구조개선)	담당자	주무관	이명아	(044-201-2316)
		담당자	사무관	임성호	(044-201-2326)
		담당자	주무관	박소영	(044-201-2328)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산란계)	책임자	과 장	문원탁	(044-201-2331)
		담당자	사무관	박춘규	(044-201-2344)
		담당자	주무관	지찬욱	(044-201-2334)

1. 개요

- '27.9월 산란계 최소 사육면적 개정($0.05\text{m}^2/\text{마리} \rightarrow 0.075\text{m}^2$)에 대비하여 산란계사 신축 및 증·개축 비용을 지원하여 선제적 사육용량 확충 추진

2. 사업자 선정

- 시·군을 통해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고(~'26.8.31.) 농식품부는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사업자* 선정(~'26.10.)

* 국회 본회의를 통해 '27년 예산 확정시 예비사업자를 사업자로 확정

- 사업자 선정위원회는 ①공사를 위한 인·허가 취득 여부, ②예산투입 대비 사육마릿수 증가 효과, ③27년 내 사업완료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 사업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및 농업법인(축사 신축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 사업포기·사업자격 박탈 등 발생 시 후순위 사업자에 배정

3. 주의사항

-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농가는 원칙적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27년 이내에 반드시 사업추진 완료

- 불가피한 사유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사업자는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실행 제한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대출 연체정보 보유, 담보여력 부족 등의 경우 대출실행 제한

4. 향후 계획

-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TF' 지역담당관을 활용하여 개별 농가에 산란계 지원사업('27년 한시적 지원)을 안내하고 사업신청 독려('26.8.)

〈서식 1〉

산란계 케이지 지원사업 신청서

[농가 작성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주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								
2. 경영현황 (현재)	○사육형태 : 방목(), 평사(), 0.075㎡(), 0.05㎡() A형()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r><td>총 사육두수</td></tr> <tr><td>마리</td></tr> </table>				총 사육두수	마리			
	총 사육두수								
	마리								
<연도별 출하실적(계란)>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head> <tr> <th>'23</th> <th>'24</th> <th>'25</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right;">개</td> <td style="text-align:right;">개</td> <td style="text-align:right;">개</td> </tr> </tbody> </table>				'23	'24	'25	개	개	개
'23	'24	'25							
개	개	개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증축(), 개보수(), 시설교체()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취득 여부 : O/X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규대비 : 뒷면에 기재								
	※ 첨부서류 : ①축산업 허가(등록)증(모든농가) ②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신축농가는 필수 제출) ③토지이용 계획 확인원(모든농가) ④신용조사서(모든농가) ⑤법인등기부등본(법에 한함) ⑥건축허가서								
4. 지원제외 대상 확인	신청자 본인은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 없음을 확인하며 위반시 사업자 선정이 무효가 되는데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상기와 같이 20 년도 산란계케이지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계획	사 업 비		
		'27년		
		용자	자부담	계
축사				
	소계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소계			
기타				
	소계			
합 계				

<현재 축산업허가(등록)증상에 기재된 가축사육시설 면적과 완공후 면적 신규대비>

현 행 면 적 (축산업 허가(등록)면적)		공사계획면적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	
m ²		m ²		m ²	

<현재 사육 마릿수 및 완공 후 사육 마릿수 신규대비>

현행 사육마릿수				사업완료후 사육마릿수		
방사	평사	0.075m ²	0.05m ²	방사	평사	0.075m ²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사업 추진계획>

계 획	추진 내용
'27.1월	
'27.2월	
'27.3월	
'27.4월	
'27.5월	
'27.6월	
'27.7월	
'27.8월	
'27.9월	
'27.10월	
'27.11월	
'27.12월	

<서식 2>

산란계케이지 지원사업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 조 및 제 22 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 수집항목 : 대표자명(법인명) · 농장명 · 연락처(주택, 휴대전화) · 주소 (집주소, 농장주소) · 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농장식별번호) 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사후관리 조사서

2. 수집 및 이용 목적

- 산란계케이지 지원사업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성과지표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 산란계케이지 지원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이용하고, 사업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용자 전액 상환 시(15년)까지 보유 · 활용

4. 제공 받는자

-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
- 사업시행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및 축산물품질평가원
-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농협경제지주(축산사료자재부)
-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 대출취급기관 : 농협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자 외의 타인/타기업/기관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명칭 _____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산란계케이지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동의서

본인은 2027년 산란계케이지 지원사업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산란계케이지 지원사업 지침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다음의 주요 준수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소독시설을 설치한다.
2.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를 위해 차량 소독조(농장 정문 입구)를 설치한다.
3. 휴대용 방역기를 구비한다.
4. 사후관리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원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5. 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6. 농장경영기록부를 작성한다.
7. '27.9월 이내 사업추진 완료가 가능하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향후, 사업지침 및 상기 준수항목 미준수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보완에 지속 불응할 경우 지원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주소 :

사업자 성명 :